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기 초 연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초연금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,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금액 산정기준 개선(안 제7조)

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금액 산정에 있어,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, 소득재분배급여금액(A급여액)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연계금액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(안 제13조)

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전국단위 신청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,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·접수 가능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확대(안 제23조)

기본 국고보조율(차등) 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

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추가보조율을 인상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국민연금법 제64조의2(분할연금 지급의 특례)에 따라 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.

제23조제5항 중 “35”를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제2의2 제1호 중 “국가 추가부담비용은 가목에서 나목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”를 “시·군·구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가목에서 나목을 뺀 금액으로 한다. 가목과 나목에서”로 하고, “비용은”을 “비용이란”으로 하며, “따른다”를 “따라 계산된 비용을 말한다”로 한다.

별표 제2의2 제1호 나목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(%)		
		20 이상 50 미만	50 이상 60 미만	60 이상
별표 2의 국가 부담비율	100분의 70	100분의 6	100분의 10	100분의 10
	100분의 80	해당 없음	해당 없음	100분의 4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78